

---

---

# 고려전기 公服制의 정비 과정에 대한 연구

---

---

김 보 광  
(고려대학교)

---

## 머리말

- I. 광종 11년 공복의 제정 과정과 그 내용
  - II. 성종 이후의 공복 정비 과정
  - III. 인종, 의종대의 공복 개정과 3색 공복의 내용
- 맺음말
-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1020963).
- 투고일: 2016. 2. 15.    ● 심사일: 2016. 2. 21.    ● 게재확정일: 2016. 3. 16.

## 요약

이 글은 광종 11년과 의종대의 공복 규정 사이의 시간적 간극을 메워 공복의 정비 과정을 살펴보자 한 것이다. 고려는 자색, 비색, 단색 등의 공복 사례나 어대의 사례들이 태조 때부터 확인되지만 신라의 유제가 남아 있는 등 아직 혼란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은 알기 어렵다. 이후 광종 11년에 후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공복 규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공복 규정은 자색, 단색, 비색, 녹색의 4색으로 나뉘고 원윤이라는 官階 및 중단경, 도항경, 소주부라는 관직이 그 기준이었다. 하지만 아직 官階와 官職이 동시에 공복 착용 기준으로 적용되어 공복 착용상에 혼란한 상황이 여전하기도 했다.

성종대에 들어 고려의 관제는 대대적으로 변하면서 공복의 기준이었던 기존의 관계, 관직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현종대 장리 공복이 개정되는 가운데 자색, 비색, 녹색의 3색으로 정리되고 단색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미 성종대 관제 개편에 따라 향리의 공복만이 아니라 공복제가 자색, 비색, 녹색의 3색 공복제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문종 이후 예제를 강조하면 정치, 사회질서의 회복을 도모하여 의종대에 『詳定古今禮』의 편찬으로 집대성되었다. 3색 공복의 구별은 인종대 고려에 온 서공의 견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4품 이상, 상참 6품 이상, 9품 이상으로 구별하였다. 이런 구조를 서공은 고려의 공복제가 송의 것을 모방했기 때문으로 이해하였지만, 고려가 성종대 이래 ‘송제화된 당제’에 따른 관제를 수용한 결과가 공복제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었다.

주제어: 공복, 4색 공복, 3색 공복, 송제화된 당제

## 머리말

옷은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인 衣食住의 한 가지이다. 국가에 의한 服制는 사회의 규범을 드러내어 정치·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이 때문에 당시 사회적 특성은 물론 국가의 지배체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고려의 공복 또한 관인들이 착용한다는 점에서 공적 지배체제와 밀접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다.<sup>1)</sup> 특히 공복에 반영된 服色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료들을 체계화, 계서화하여 구별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공복에 대해 여러 연구들이 있어왔으니, 우선 주로 복식의 입장에서 조선과의 복식 비교, 중국과의 복식, 소재, 문양 비교 등의 주제로 문헌, 회화 자료 등을 통해 연구되었다.<sup>2)</sup> 역사학의 입장에서는 공복의 변화를 관제의 정비과정과 연관지어 검토한 연구들이 많다. 광종 11년의 공복 제정 사실을 신라와의 관련 속에서 찾거나<sup>3)</sup> 광종대 정치세력의 변동에서 찾으면서 후주의 제도를 도입했을 것으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sup>4)</sup> 또 현종대 향리 공복의 성립과정을 관제 및 공복의 정비과정과 결부지어 살핀 연구도 있다.<sup>5)</sup> 특히 김윤정의 연구는 공복의 변천에 대한 사실

- 
- 1) 고려시대에 관인들이 착용하는 公的 服飾에는 祭服, 朝服, 公服이 있다. 관인의 일상 업무 중에 착용하는 것이 공복이기 때문에, 공복이 관인의 服으로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이 글의 주요 연구 대상을 공복으로 하였다.
  - 2) 서옥경, 1997, 「고려시대와 송대의 관복 비교연구-공, 상복을 중심으로-」 『복식』 31, 한국복식학회  
임경화·강순제, 2006, 「고려 초 공복제(公服制) 도입과 복색(服色) 운용에 관한 연구」 『복식』 56~1, 한국복식학회.  
이승해, 2011, 「고려시대 官服 연구」,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 박사학위논문.
  - 3) 黃善榮, 1987, 「高麗初期 公服制의 成立」 『釜山史學』 12, 부산사학회; 2002, 「나말여초 정치제도사 연구」, 국학자료원.
  - 4) 申虎澈, 1981, 「高麗 光宗代의 公服制度」, 『高麗光宗研究』(이기백 편), 一潮閣.
  - 5) 강은경, 1999, 「高麗時期 鄉吏 公服制」, 『韓國思想과 文化』 4.

상의 총정리라 할 만큼 면밀히 시간순으로 추적하면서도 공복의 변화를 고려사회의 관제상 변화와 관련지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6) 한편으로 공복의 한 요소인 魚袋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어대가 관직구조와 일정한 상관 관계에 있으며,7) 다른 한편으로는 산계와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되기도8) 하였다. 이제 공복의 정비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평가해도 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고려의 공복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일화가 있다.

신은 上國에 사신으로 세 번 갔는데, 일행의 衣冠이 송나라 사람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조회에 들어가다가 너무 일찍 도착하여 紫宸殿 문 앞에서 있는데, 閣門員 한 명이 와서 “누가 高麗人 使者인가”라고 묻기에 “나다”라고 하였더니 웃으면서 간 일이 있습니다.9)

위 기록은 『삼국사기』 잡지에 실려 있는 것으로, 김부식이 송에 가서 직접 겪은 일화이다. 즉 송나라 관인이 김부식을 같은 송나라의 관인으로 착각하여 일어난 것인데, 착각의 원인은 얼굴과 같은 외양이 아니라 옷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고려와 송의 복식이 흡사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고려의 복식 규정은 송의 것과 얼마나, 왜 비슷하였는가에 대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즉 고려가 唐制를 기초로 중추원과 삼사로 대표되는 송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관제를 갖추었다는 이제까지의 연

---

6) 김윤정, 2010, 「고려전기 집권체제의 정비와 관복제의 확립」, 『한국중세사연구』 28, 한국중세사학회.

7) 김보광, 2015, 「고려전기 魚袋의 개념과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韓國史研究』 169, 한국사연구회.

8) 이현숙, 1992, 「신라말 魚袋制의 成立과 運用」, 『史學研究』 43·44, 한국사학회  
이현숙, 2014, 「금석문으로 본 고려 후기 어대제의 변화」, 『역사와 현실』 91, 한국역사연구회

9) 『三國史記』 33 雜志 2 色服.

구 성과에 비추어, 공복으로 대표되는 복식 관련 제도가 당제와 유사하다는 통설과 달리 송의 그것과 흡사한 이유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광종과 의종대까지의 공복 변화 과정을 살피면서 공복이 관직 등 관료체제와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또 송제와의 관련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 I. 광종 11년 공복의 제정 과정과 그 내용

관인들은 국가로부터 공적 지위를 부여받아 일정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들로, 일반인과 구별되는 복장을 갖추고 있었다.

(가) 6월, 문덕전에 납시어 진사들을 대상으로 복시를 시행하였는데, 시어사 노단이 아뢰어 일이 왕의 뜻을 거슬렀다. 왕이 화가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끌고 나가 公襴을 벗기고 묶게 했다.<sup>10)</sup>

1065년 6월에 문종이 복시를 보는 과정에서 시어사인 노단이 아뢰어 말 이 국왕 문종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화가 문종이 노단을 밖으로 끌어내 묶어 두게 했는데, 이때 그의 ‘公襴’을 벗기고 있다. 글자 그대로 공적인 두루마기라는 뜻의 공란을 벗긴 이유는, 이를 입힌 채 죄인처럼 묶을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서 侍御史인 노단이 입고 있던 ‘공란’은 곧 공복이라 하겠다.

10) 『高麗史節要』 5 文宗 19년(1065) 6월.

이처럼 평상시 업무 중에 입는 관인들의 옷인 공복에 대해서, 광종 11년인 960년에 고려는 아래와 같이 백관의 공복을 네 가지 색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것이 고려시대 최초의 공복 규정이다.

(나-1) 광종 11년(960) 3월에 백관의 공복을 정하였다. 元尹 이상은 자삼, 중단경 이상은 단삼, 도향경 이상은 비삼, 소주부 이상은 녹삼으로 한다.<sup>11)</sup>

960년에 백관의 공복을 정했는데, 자색, 단색, 비색, 녹색의 4색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4색을 가름하는 기준으로 원윤이라는 官階와 중단경, 도향경, 소주부라는 관직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들은 각 복색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당시 관료들을 계서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이 최초의 공복 규정인 바, 이보다 앞선 956년(광종 7)에 이미 백관의복 제도를 규정하도록 한 계기가 있었다.

(나-2) 7년(956) 後周에서 將作監 薛文遇를 보내 왕을 加冊하여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로 삼고, 아울러 백관의 衣冠制度는 중국 제도를 따르도록 명하였다. 전 大理評使 雙冀가 설문우를 따라 왔다.<sup>12)</sup>

이것은 후주에서 광종을 책봉해준 기록으로, 앞서 953년(광종 4)에 檢校太保·使持節·玄菟州都督·充大義軍使兼御史大夫·高麗國王으로 책봉하였던 것에 대한 加冊이었다.<sup>13)</sup> 이때 후주가 고려에 ‘백관의 의관제도는 중국 제도를 따르도록’ 요구한 것과 이때의 사신에 쌍기가 고려에 왔음도 기록되어 있다.

11) 『高麗史』 72 志 26 輿服 1 冠服 公服 光宗 11年(960) 3月.

12) 『高麗史』 2 世家 2 光宗 7년(956).

13) 沈載錫, 2002, 「고려와 五代·宋의 책봉관계」, 『高麗國王 冊封 研究』, 혜안, 64~66쪽.

위의 기록에서 후주가 고려에 ‘중국의 제도’를 따를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 문장이 ‘周遣將作監薛文遇 來加冊王 爲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 仍令百官衣冠 從華制’으로, 후주가 광종을 책봉한다는 내용과 백관의 관에 대한 내용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런데 말을 잇는다는 연용사인 ‘仍’으로 두 구문이 이어지고 있어 뒷내용의 주어는 앞과 같은 (후)주라 생각된다. 곧 후주가 광종을 책봉하고는 의관 제도를 華制인 중국의 제도를 좇도록 하였다고 이해된다. 더구나 책봉문에 “다만 聲教를 따를 뿐이니 어찌 멀다고 끝이겠는가”라는 구절도 있어,<sup>14)</sup> 후주의 세종이 자신의 정치를 과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sup>15)</sup>

주지하다시피 956년 이후 광종의 정치 개혁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광종은 즉위 이래 온건한 방법으로 호족 세력을 무마하면서 왕권의 안정을 도모하다가 956년(광종 7)에 노비안검법의 시행을 시작으로 쌍기를 귀화시키면서 개혁 정치를 추진하였다. 이어 958년(광종 9)에는 과거제도의 시행으로 이어졌다.<sup>16)</sup> 960년의 공복 제정도 그 일환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변화에는 왕권을 강화하면서 호족 세력을 약화

14) 『冊府元龜』 965 外臣部 封冊 3 世宗 顯德 2년(955) 11월. “朕嗣守鴻圖 方崇王道禮樂 征伐之柄 盡出眇躬 山河帶礪之盟 思傳不朽 但遵聲教 豈限遐遙 俾光燾土之封 更假自天之寵”

15) 신호철, 1981, 앞의 글, 86쪽. 다만 고려측에서 衣冠을 후주의 제도를 따르겠다고 요청을 하여서 ‘수락’을 하였다고 보아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신라의 김춘추가 648년에 백관의 의복제도를 당제에 따르는 문제로 당의 허락을 구한 바 있는데(『三國史記』 33 雜志 2 色服), 참고되는 사례가 아닌가 한다. 한편으로 이때의 의관 제도 등으로 광종의 왕권강화 및 11년의 공복제도 제정에 후주가 영향을 끼쳤다고 파악하기도 한다(나중우, 1995, 「오대 및 송과의 관계」, 『한국사』 15-고려전기의 사회와 대외관계-, 국사편찬위원회, 282~283쪽). 이와 달리 이때 중국식의 의관제도를 좇도록 한 주체를 광종으로 이해한 견해도 있다(李基白, 1981, 「光宗의 改革과 後周와의 關係」, 『高麗光宗研究』(李基白 編, 一潮閣, 147쪽).

16) 『高麗史』 2 世家 2 光宗 9년(958) 5월 병신(16). “丙申 御威鳳樓 放枋 賜崔暹等及第” 『高麗史』 73 志 27 選舉 1 科目 1 “光宗九年五月 雙冀獻議 始設科學 試以詩·賦·頌及時務策 取進士 兼取明經·醫·卜等業”

시키려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었다.<sup>17)</sup> 특히 960년에 대상 준흥, 좌승 왕동의 제거를 비롯해 감옥이 넘칠 정도로 호족 숙청이 과격하게 진행되었고, 순군부를 군부로, 내군을 장위부로 개편하는 군제개혁도 이루어졌으며, 이해 3월에는 개경을 황도, 서경을 서도로 부르는 등 자부심을 제고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시기에 광종은 지배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된다.<sup>18)</sup>

그렇다고 해서 광종 11년이 되어서야 고려에 공복이 처음 등장한 것은 아니었다. 공복제도는 이미 신라 중대에 등장한다. 법흥왕대에 공복을 마련하였는데,<sup>19)</sup> 관등에 따라 자색-비색-청색-황색의 4색이었다.<sup>20)</sup> 무열왕은 당제에 입각한 공복제도를 수용하였고, 신라 하대에는 당대에 공복의 장식물이었던 어대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즉 신라시대에 이미 중국식에 따른 공복제도가 도입되어 있었다.<sup>21)</sup> 그리고 이 같은 신라의 공복제는 신라하대까지 존속하였다.<sup>22)</sup> 이는 최승로가 “신라 때에 公卿·百僚·庶人の

- 
- 17) 이상 광종대 개혁 정치의 과정, 목적 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들이 있다. 金龍德, 1959, 「高麗 光宗朝의 科擧制度 問題」, 『中央大論文集』4. 朴喜熙, 1973, 「高麗時代 ‘官僚制’에 대한 고찰」, 『歷史學報』 58. 河炫綱, 1974, 「豪族과 王權」, 『한국사』 4, 국사편찬위원회. 洪承基, 1981, 「高麗前期 奴婢政策에 대한 一考察-國王과 貴族의 政治的 利害와 이에 따른 奴婢에 대한 立場의 차이-」, 『震檀學報』 51; 1983, 『高麗貴族社會와 奴婢, 一潮閣. 윤성재, 2002, 「高麗 光宗의 政治基盤」, 『韓國史學報』 13. 최종석, 2008, 「고려초기의 관계(官階) 수여 양상과 광종대 문산계(文散階) 도입의 배경」, 『역사와 현실』 67.
- 18) 申虎澈, 1981, 앞의 글, 83쪽.
- 19) 『三國史記』 4 新羅本紀 4 法興王 7년(520) 춘정월.
- 20) 『三國史記』 33 雜志 2 色服.
- 21) 신라시대의 공복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된다. 申虎澈, 1981, 앞의 글, 76~81쪽 및 黃善榮, 1987, 앞의 글; 2002, 앞의 책.
- 22) 834년에 내린 禁制를 통해서도 당식의 복식이 왕실과 귀족층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한다(金東旭, 1979, 「興德王 服飾 禁制의 研究- 新羅末期 服飾 再構를 中心으로-」, 『增補 韓國服飾史研究』, 亞細亞文化史).

의복·신발·버선에는 각기 品色이 있었습니다. 공경과 백료는 조회 시에는 公褸를 입고 穿執을 갖추었으나, 조회에서 물러나오면 便服을 입었습니다.”라고<sup>23)</sup> 한 데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려초라고 해서 공복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전혀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금석문 등으로 그 실례를 엿볼 수 있다. 곧 939년(태조 22)에 이항추는 병부대감으로 있으면서 단금어대를 받았고,<sup>24)</sup> 943년(혜종 즉위년)에 구족달은 비은어대를 받았다.<sup>25)</sup> 또 950년(광종 1)에 손소는 자금어대를 받은 바 있다.<sup>26)</sup> 이때 이들이 받은 ‘賜某某魚袋’는 공복과 어대의 결합을 의미하는데,<sup>27)</sup> 단금어대라면 단색 공복과 금어대, 비은어대는 비색 공복과 은어대, 자금어대는 자색 공복과 금어대를 의미한다. 곧 이들 사례는 광종 11년 이전, 태조대부터 이미 공복이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이 같이 국초부터 자색, 단색, 비색의 공복과 금어대, 은어대의 장식물이 등장하고 있어 광종 11년의 공복 규정 중 녹색을 제외한 나머지 세 색의 사례를 찾을 수 있다. 곧 국초부터 4색의 공복제가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28)</sup> 그럼에도 공복 착용에 꽤나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음을 아래의 사례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나-3) 우리 조정에서는 태조 이래로 귀천을 논하지 않고 마음대로 옷을 입었습니다. 비록 관직이 높아도 집이 가난하면 공관을 갖출 수 없고, 관직이 없어도 집이 부유하면 능라금수(綾羅錦繡)를 입습니다.<sup>29)</sup>

23) 『高麗史』 93 列傳 6 崔承老, “新羅之時 公卿百僚庶人 衣服鞋襪 各有品色 公卿百僚 朝會 則著公褸具穿執 退朝 則逐便服之”

24) 한국역사연구회 편, 1996, 『毘盧庵眞空大師普法塔碑』, 『羅末麗初金石文』(上), 59쪽

25) 한국역사연구회 편, 1996, 『淨土寺法鏡大師慈燈塔碑』, 『羅末麗初金石文』(上), 109쪽

26) 한국역사연구회 편, 1996, 『大安寺廣慈大師碑』, 『羅末麗初金石文』(上), 181쪽

27) 어대에 대해서는 아래의 연구 참고.

이현숙, 1992, 앞의 글; 이현숙, 2014, 앞의 글; 김보광, 2015, 앞의 글.

28) 김윤정, 2010, 앞의 글, 448쪽 주31).

(나-4) 고려 태조가 나라를 열면서는 초창기라 일이 많으므로 신라의 구제를 그대로 썼다.<sup>30)</sup>

(나-3)은 역시 최승로의 시무책 중 일부인데, 고려초기에는 신분의 귀천이나 관직의 고하가 아니라 마음대로 복식을 착용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관직의 유무가 아닌 財力에 의해 복식, 특히 비단류 등을 착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서 관직 없이 재력만 이들이 소위 지방이 호족 세력을 가리킨 것이 아닌가 하나, 고려초의 복식이 일정한 규칙이 아닌 재력에 따라 마음대로 입을 수도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을 지적한 것이라 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겠다. 또 (나-4)는 여복지의 서문으로, 조선초의 『고려사』 찬자들의 입장에서 고려 초기의 복식 관련 규정을 찾지 못해 신라의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고려초의 복식 관련 제도는 미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같은 혼란한 상황이었다면 데에는 건국 초기라는 시대적 상황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아무래도 호족이 전국적으로 세력을 지니고 있던 당시까지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중앙집권화된 관료체계가 성립하기 어려웠던 것이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라 생각된다.<sup>31)</sup>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고려는 건국 이래 공복이 존재하기는 하였지만 그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 관련 제도까지는 미처 정비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면 광종 11년의 공복 규정은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공복을 일정한 방식으로 정비하였던 것이다.

그럼 광종 11년 공복 규정의 자세한 내용을 살피기 위해 그 규정을 다시 한 번 보자.

29) 『高麗史』 93 列傳 6 崔承老.

30) 『高麗史』 72 志 26 輿服 序.

31) 申虎澈, 1981, 앞의 글, 82쪽.

(나-1) 광종 11년 3월에 백관의 공복을 정하였다. 元尹 이상은 자삼, 중단경 이상은 단삼, 도항경 이상은 비삼, 소주부 이상은 녹삼으로 한다.<sup>32)</sup>

광종 11년에 백관의 공복제도로 제정된 내용은 元尹 이상은 자삼, 중단경과 도항경, 소주부를 경계로 단삼, 비삼, 녹삼으로 하여 복색으로 4개 등급으로 나눈 것이다. 복색 사이의 관계는 시정전시과의 지급대상을 나누는 데에 복색이 사용되고 있어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즉 자삼은 1품 전 110결, 시 110결부터 18품 전 32결, 시 25결까지의 18개 품으로 나뉘어서, 문반의 경우에 단삼은 1품 전 65결, 시 55결부터 10품 전 30결, 시 18결의 10개 품으로, 비삼은 1품 전 50결, 시 40결부터 8품 전 27결, 시 14결까지, 녹삼은 1품 전 45결, 시 35결부터 10품 전 21결, 시 10결까지 품별로 차등적으로 토지를 지급받고 있다. 토지 지급결수에 따라 자삼-단삼-비삼-녹삼의 순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들 복색에 상하고저의 관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결국 광종 11년의 공복 규정은 관인의 고하에 따라 4색 중 하나로 정해진 복색을 착용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서 원윤은 6품의 향직으로, 국초에 官階로 사용된 것이고, 중단경, 도항경, 소주부는 관직으로 보이는데 그 실체는 잘 알 수 없다.<sup>33)</sup> 다만 중단경과 도항경은 모두 일선 관부의 長 또는 副長을 의미하는 ‘卿’에 해당되어, 명칭상 중단경과 도항경은 비슷한 지위였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중단경의 사례는 찾을 수 없고, 그나마 도항경은 몇 사례를 찾을 수 있어 그 실체를 짐작케 한다. 즉 왕건이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행한 첫 번째 인사조치에 韓粲 歸評을 도항령으로, 林湘煖을 도항경으로 삼고 있다.<sup>34)</sup>

32) 앞의 주11)과 같음.

33) 末松保和, 1953, 「高麗初期の兩班について」, 『東洋學報』 36-2; 1965, 『靑丘史草』 1, 笠井出版社.

34) 『高麗史』 1 世家 1 太祖 원년(918) 6월 신유. “辛酉 詔曰 …… 遂以韓粲金行壽爲廣評侍中 韓粲黔剛爲內奉令 …… 韓粲歸評爲都航司令 …… 林湘煖爲都航司卿”

이로 보아 도향경은 도향사의 副長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개국초에 시행된 인사 조치는 상징성이 매우 강해서, 이때 임명이 이루어져 나열된 官司의 順序가 곧 당시 각 관사의 서열로 이해된다.<sup>35)</sup> 이렇게 보면 도향경은 국초부터 주요 관직의 하나였으며, 문반 계통의 관직이라 하겠다.<sup>36)</sup>

小主簿 역시 잘 알 수 없다. 하지만 主簿, 注簿로 나타나는 관직명을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데, 국자감, 예빈성, 위위시를 비롯해 태복시, 태부시, 소부감, 장작감, 사재시, 군기감 등의 종7품 관직이다.<sup>37)</sup> ‘7寺’나 ‘5監’ 등으로 불리는 실무 행정관청의 하위 실무직이라 하겠다. 여기에 작다는 의미의 ‘小’가 붙었으니, 소주부는 주부보다 하위에 위치하는 관직임은 분명하다. 주부가 하위 실무직이라는 점에서 소주부는, 광종대 관직구조를 알 수는 없지만, 최하급의 품관직이거나 서리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녹삼은 ‘소주부’로 대표되는 관직 구조상 최하급 이상이 착용하는 것으로 보아도 되겠다.<sup>38)</sup>

그렇다고 할 때, 광종 11년의 4색 공복은 일단 중앙의 모든 관인이 그 대상으로 포함되었으리라 본다.

- 
- 35) 李泰鎭, 1972, 「高麗 宰府의 成立-그 制度史의 考察-」, 『歷史學報』 56.  
金甲童, 2005, 「고려 태조 초기의 중앙 관부와 지배세력」, 『고려전기 정치사』, 일지사.  
金甫桃, 2012, 「고려 태조의 政治觀과 國政 운영」, 『韓國人物史研究』 17.
- 36) 이외에 934년(태조 17)에 서경의 직제를 늘리면서 도향사를 설치했는데, 여기의 장이 도향경이다. 그리고 1178년(명종 8)에는 서경 직제를 개편하여 도향사를 공조에 예속시킨 바 있다(『高麗史』 77 志 31 百官 2 西京留守官 “太祖 …… 十七年 增置官宅司 掌供賓客之事 卿二人 大舍二人 史二人 都航司 卿一人 大舍一人 史一人 …… 明宗八年 更定官制 …… 工曹員吏亦同上 雜材·營作院·都航司 并屬焉”). 서경의 직제에서도 도향사는 문반 계통의 관직으로 보인다.
- 37) 『高麗史』 76 志 30 百官 1 해당 관청. 이외에도 동궁관, 제비주부 등 왕실 관련 관청에서도 찾아지며, 고려후기로 가면 倉庫 등 그 설치 범위가 더욱 늘어난다.
- 38) 시정전시과에서 최하급은 문반과 잡업의 녹삼 10품으로 전 21결, 시 10결이다. 이 수치는 문종대 개정된 전시과에서 전 22결의 16과와 전 20결의 17과 사이와 비교된다. 更定田柴科의 16, 17과에는 諸令史, 書史, 主事나 書令史, 諸史 등 서리직들이 대거 속해 있어 참고된다.

(다) 봄 3월, 김책 및 명경업과 복업의 각 1인에게 급제를 내려주었다. 왕이 천덕전에 납시어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김책에게 갈옷을 벗도록 명하여 공복을 내려주고는 연회에 나아가게 했다.<sup>39)</sup>

964년(광종 15) 3월에 과거 시험이 있었고, 이때 김책이 급제했다. 광종은 그에게 공복을 내려주었다고 하므로, 이것은 합격자에 대한 포상과 우대의 의미로 공복을 내려주었을 것이다. 당시 김책에게 일반인으로서의 복장을 벗게 하는 ‘釋褐’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가 아직 서리, 하급 관료 등이 아닌 순수하게 白身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40)</sup> 이제 급제하여 아직 관직을 제수받기 이전인 그에게 관직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로 공복을 사여한 것이다. 이 점에서 그는 광종대 새로운 지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한 공복제의 적용받는 신진세력이었을 것이다.<sup>41)</sup>

문제는 김책이 받은 공복의 색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분명 김책에게 사여된 공복은 광종 11년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광종 11년 규정에서 가장 낮은 것은 소주부 이상이 녹삼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갓 급제한 김책이 급제와 동시에 소주부 수준의 관직에 임명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 즉 김책은 급제자의 자격을 획득하고 곧바로 연회에서 공복을 사여받았을 뿐이므로 아직 관직을 제수받기 전이라고 보아야 맞을 것이다.

39) 『高麗史節要』 2 光宗 15년(964) 3월.

40) 개정전시과 시기 급제자들이 곧바로 관직을 제수 받지 못하고 將仕郎 등의 산계만을 받는 경우가 많았음을 밝힌 연구가 있어 참고된다(朴龍雲, 1990, 「高麗時代의 科擧- 製述科의 運營-」, 『高麗時代 蔭敍制와 科擧制 研究』, 一志社, 285~286쪽; 李鎭漢, 1996, 「高麗 前期 官人의 初入仕와 土地分給」, 『민족문화연구』 29, 271~276쪽). 더불어 이규보가 급제 후에 관직을 받지 못해 괴로워하였음이 그의 문집에 묘사되어 있다. 이 점에서 급제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관직을 제수받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41) 申虎澈, 1981, 앞의 글, 84~85쪽.

그렇다면 김책이 사여받은 공복의 복색은 무엇이며, 광종 11년 규정에는 누락된 것인가. 이미 관직 취임 자격을 획득한 급제자가 착용대상에서 제외된 듯이 보여 이 규정이 당시 모든 관인증을 포괄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규정으로 얼핏 생각되기도 한다. 게다가 광종대 공복 규정이 불완전하다는 가정을 도와주는 사례가 더 있다. 즉 이 시기 공복에 대해 “관의朝服은 紫·丹·緋·綠·靑·碧이다.”라고 한 견문이<sup>42)</sup>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해외사정광기』라는 책이 전제된 것이라 하는데, 『해외사정광기』는 960년대에 작성된 사행기로, 이 책은 南唐의 사신으로 대략 959~963년 사이에 고려에 왔던 章僚가 지은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십국춘추』, 『자치통감』, 『육씨남당서』 등에 산재되어 일부의 내용이 전하고 있다.<sup>43)</sup> 즉 광종대에 고려로 온 사신 장료가 보기에 고려는, 紫·丹·緋·綠이라는 「여복지」 상에 있는 복색뿐만 아니라, 청색과 벽색이라는 두 가지 색의 복색을 더 갖고 있던 것이다. 여기에서 청색과 벽색은 모두 푸른 색 계통으로 사실 한 가지인지 아니면 두 가지 색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또 이들 복색의 구분 기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품관은 자, 단, 비, 녹의 사색 공복으로, 청색과 벽색은 雜吏의 공복으로 추정하면서 이는 광종대의 공복 규정이 중국의 그것과는 다른 독자적 성격의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sup>44)</sup>

하지만 녹색과 청색, 벽색이 모두 비슷한 색을 지칭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이 필요에 의해 표현상 구분되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공복의 복색으로 구체적인 색깔로 구별되었는지는 불분명한 것이다. 녹색이나 청색, 벽색 모두 푸른색 계통의 색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42) 『十國春秋』 28 南唐 14 列傳 章僚. “官朝服紫·丹·緋·綠·靑·碧”

43) 이 사행기에 대한 소개는 김대식, 2005, 「고려 초기 중앙관제의 성립과 변화」, 『역사와 현실』 58 참조.

44) 김대식, 2005, 「고려 초기 중앙관제의 성립과 변화」, 『역사와 현실』 58, 209쪽.

아래 서공의 언급을 보자.

(㉠-1) 吏職의 복색은 庶官의 복색과 다르지 않다. 다만 綠衣에 때로 <색이> 진하고[深] 옅은[淺] 것이 있다. 예로부터 고려는 唐의 제도를 모방하여 푸른[碧] 옷을 입었다고 전하나, 이제 물어 보니 그렇지 않다. 대체로 고려의 백성은 가난하고 풍속은 검소하다. 그런데 도포[袍] 하나의 값이 거의 白金 1斤이나 되니, 항상 빨아서 다시 물들여 쓴다. <그래서 색이> 진하거나 푸른 것[碧] 같을 뿐이요, 특정 등급을 구별하는 복색은 아니다.<sup>45)</sup>

서공은 청색과 벽색이 옷감이 비싸 세탁과 염색의 반복 과정에서 채도의 淸濁으로 구별되지만 실은 하나의 색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서공의 견문이 12세기 전반의 일이기 는 하지만, 염색 기술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오히려 광종대가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장료가 목격한 녹색, 청색과 벽색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색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서공의 말을 들어보자.

(㉠-2) 서관의 복식은 녹색 옷[綠衣]에 나무로 된 홀[木笏]을 들고 幞頭를 쓰고 검은 가죽신[烏鞞]을 신는다. 進士로 入官한 때로부터 중앙관서[省曹]의 補吏나 州縣의 守尉·主簿·司宰 등은 누구나 이것을 착용한다.<sup>46)</sup>

서공은 庶官의 복식으로 녹색 옷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이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한 진사를 비롯해 관서의 서리, 지방의 영위, 주부, 사재까지라고 말하고 있다. 즉 ‘영위’라는 지방의 수령과 향리까지도 녹색 옷을 입는 대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품관은 아니지만 진사가 공복

45) 『高麗圖經』 21 吏職.

46) 『高麗圖經』 7 冠服 庶官服.

을 입는 대상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서궁에게 하위 관인과 서리들은 사실상 녹색 옷을 입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보였다.

서궁의 견문이 12세기로 차이가 나지만, 분명 향리에 이르기까지 고려초부터 공복을 입었음을 분명하다. 다음을 보자.

(태-3) 이때에 堂大等·正朝·賜丹銀魚袋 金希一 등이 저쪽에서 돌이킨 서원이 되게 하고 이쪽에서 끊어진 인연을 이어 마침내 30단의 철통을 주조하고 이어 60척의 幢柱를 세웠다.<sup>47)</sup>

이것은 962년(광종 13)에 세워진 청주 용두사철당간의 명문 중 일부이다. 여기에 보면 청주의 호족 김희일이 당대등이었는데, 正朝·賜丹銀魚袋라고 되어 있다. 당대등은 뒤에 호장으로 개칭되는 것으로<sup>48)</sup> 그가 향리, 즉 호족이었음을 말해준다. 또 정조는 7품에 해당하는 官階로, 6품인 원윤보다 아래에 위치한다.<sup>49)</sup>

이 사례에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당장 단색 공복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면서, 다른 하나는 원윤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 호족들도 단색 등의 공복을 입었다는 점이다.<sup>50)</sup> 따라서 광종 11년의 공복제도는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따라 광종대 공복제의 적용 대상은 관직이나 원윤 이상의 관계를 지닌 호족만이 아니라 진사나 지방의 낮은 호족 같은 전체 지배층을 포괄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광종 11년에 제정된 4색의 공복 중 푸른색 계통의

47) 蔡雄錫 편, 2012, 「龍頭寺址鐵幢竿」, 『韓國金石文集』 35-高麗 19 金石 및 기타-, 국학진흥원.

48) 『高麗史』 75 志 29 選舉 3 鄉職 成宗 2년(983). “成宗二年 改州府郡縣吏職 以兵部爲司兵 倉部爲司倉 堂大等爲戶長”

49) 『高麗史』 77 志 31 百官 2 文散階.

50) 강은경, 1999, 앞의 글. 한편 그는 같은 논문 124쪽에서 김희일이 중앙의 관직이 없어서 금어대 대신 은어대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였다.

복색, 즉 녹색이 가장 하위에 위치한 것이며, 그 기준으로 제시된 소주부는 문반 관직 보다는 향리나 胥吏職 정도의 지위로 파악해 보았다. 또한 원운 이하의 향리들도 분명 공복을 입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김책처럼 급제한 ‘진사’도 공복을 착용할 수 있고, 그 복색은 녹색이었을 것으로 추론해 보았다.<sup>51)</sup> 결국 이 4색 공복은 품관직만이 아니라 급제자, 서리, 향리를 포함하는 모든 지배층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겠다.<sup>52)</sup>

하지만 공복 규정을 제정하였어도 그 즉시 일률적으로 시행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승로의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태)4) 우리 조정에서는 태조 이래로 귀천을 논하지 않고 마음대로 옷을 입었습니다. 비록 관직이 높아도 집이 가난하면 공란을 갖출 수 없고, 관직이 없어도 집이 부유하면 능라금수(綾羅錦繡)를 입습니다. …… 간청하건대 판료들이 조회에서는 모두 중국과 신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공란과 천 집을 갖추도록 하고, 일을 아될 때에는 버선신·명주신·가죽신을 신도록 하며, 서인들은 화려한 문양과 주름이 잡힌 고운 비단[紗縠]을 입을 수 없게 하고 다만 굵은 명주[紬絹]만 입도록 하십시오.<sup>53)</sup>

최승로의 시무28조 중 일부이다. 여기에서 그는 ‘貴賤을 논하지 않고 마음대로 옷을 입었’다고 하면서 관직의 유무가 아니라 빈부에 따라 공복을 갖추는 데에 차이가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귀천을 논하지 않고 마음대로 옷을 입었다는 데에서 공복이 갖는 계서화 기능을 사실상 하지

51) 다만, ‘소주부’라는 관직명으로는 당시 공복 대상자의 하한을 담아내기 어려웠음은 분명하다.

52) 黃善榮, 1987, 앞의 글; 2002, 앞의 책.

金塘澤, 1981, 「崔承老의 上書文에 보이는 光宗代의 ‘後生’과 景宗元年 田柴科」, 『高麗光宗研究』, 一潮閣.

全基雄, 1985, 「高麗 景宗代의 政治構造와 始定田柴科의 성립기반」, 『震檀學報』 59; 1996, 『나팔려초의 정치사회와 문인지식층』, 혜안.

53) 『高麗史』 93 列傳 6 崔承老.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광종 11년 공복 규정이 있음에도 봉사를 올린 시점이 성종 원년까지도 혼란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官階인 원윤과 관직인 중단경, 도향경 등 이중의 기준이 당시의 지배층에게 적용된 결과로 빚어진 혼란이 아니었나 한다.

정리하자면, 광종 11년에 제정된 공복 규정은 자색, 단색, 비색, 녹색의 4색으로 나뉘고 원윤이라는 官階 및 중단경, 도향경, 소주부라는 관직이 그 기준이 되었다. 또한 원윤 이상의 호족들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향리들도 단색 공복을 입거나 급제를 통해 입사한 진사도 녹색 공복을 입는 등, 이때의 공복은 중앙의 관직자들만이 아니라 향리 등 사실상 모든 지배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아직 官階와 官職이 동시에 공복 착용 기준으로 적용되어 공복 착용상에 귀천의 구별이 없는 등의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 II. 성종 이후의 공복 정비 과정

광종 11년의 공복 규정은 이후 고려의 기준으로 작동했다. 당장 앞장에서 언급한 962년의 ‘용두사철당간’이나 976년(경종 원년) 시정전시과의 지급 기준으로 복색이 사용되고 있는 것에서 그 점이 확인된다.

하지만 성종대에 들어와서는 공복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관제의 개편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성종은 원년(982), 2년(983)에 걸쳐 대대적인 관제 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내사문하성이 설치되어 재상기구로 자리매김하였고, 어사도성과 6관이 마련되어 행정실무를 장악했다.<sup>54)</sup> 또 991년(성종 10)에는 중추원과 삼사가 도입되어 설치되었다.<sup>55)</sup> 지방의 경우에도, 983년(성종 2)에는 12주에 외관을 임명

하기 시작하였고<sup>56)</sup> 호장, 부호장 등의 향리직제 또한 정비되었다.<sup>57)</sup> 한편으로 元尹으로 대표되던 국초의 官階가 958년(광종 9)에 도입된 문산계에 밀려 향직화하고 문산계가 양반을 계서화하는 유일한 산계로 기능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관인의 지위를 나타내는 데에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sup>58)</sup>

공복은 복색을 통해 귀천을 구별하고 尊卑를 드러내어 예를 잃지 않게 하는 것이 주요 목적 중 하나였다.<sup>59)</sup> 즉 관인들의 상하를 드러내는 기준으로 관직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상황에서, 성종대 초반부터 이어진 각종 관제 개편으로 인해 관직 변화도 크게 발생했고, 이로 인해 광종대 이래의 관료조직체계는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다. 광종 11년 공복 규정에 등장한 중단경, 도향경 같은 기준에 기준으로 작동하던 관직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제 새로운 공복 기준의 설정이 요구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성종대의 관제 개편에 따른 관직명 등의 변화를 담으려는 데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임에 틀림없다.<sup>60)</sup> 유방헌의 사례를 통

- 54) 『高麗史』 76 志 30 百官 1 門下府 및 尙書省 등
- 55) 『高麗史節要』 2 成宗 10년(991) 10월. “韓彥恭奏 宋樞密院 卽我朝宿直員吏之職 於是 始置中樞院.”
- 56) 『高麗史』 3 世家 3 成宗 2년(983) 2월 무자(1). “二月 戊子 始置十二牧.”
- 57) 『高麗史』 75 志 29 選舉 3 鄉職 成宗 2년(983). “成宗二年 改州府郡縣吏職 以兵部爲司兵 倉部爲司倉 堂大等爲戶長 大等爲副戶長 郎中爲戶正 員外郎爲副戶正 執事爲史 兵部卿爲兵正 筵上爲副兵正 維乃爲兵史 倉部卿爲倉正.”
- 58) 문산계의 도입 및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 참고.  
 武田幸男, 1966, 「高麗初期의官階-高麗王朝確立過程の一考察-」, 『朝鮮學報』 41.  
 朴龍雲, 1981, 「高麗時代의 文散階」, 『震檀學報』 52.  
 金甲童, 1988, 「高麗 初期 官階의 成立과 그 意義」, 『歷史學報』 117.  
 金甲童, 1997, 「高麗初의 官階와 鄉職」, 『國史館論叢』 78.  
 최중석, 2008, 앞의 글.
- 59) 『高麗史節要』 2, 成宗 원년(982) 6월. “一 新羅之時 公卿百僚庶人衣服鞋襪各有品色 公卿百僚朝會 則著公襪 具穿執 退朝 則逐便服之 庶人百姓不得服文彩 所以別貴賤 辨尊卑也.”
- 60) 이 때문에 성종대 이후 공복 규정은 관직 중심으로 재편되었다고 이해된다.

해 이를 확인해 보겠다.

(마-1) 옹희 4년 정해년, 성종이 처음 즉위하여 유신에 명하여 대책을 짓게 하였는데 공이 또 1등을 하였다. 임금이 포상하여 制로 御事右司員外郎 賜緋 史館修撰官에 임명하였다. 또 기거사인 지제고를 더하였다가 다시 禮部郎中 賜紫를 더하였다. 통화 13년 을미년에 제로 통직랑 중추직학사에 임명하였다.<sup>61)</sup>

이것은 유방헌의 묘지명 중 성종대 전반의 관력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정해년(987) 이후에 御事右司員外郎 賜緋 史館修撰官이 되었다가 기거사인 지제고를 거쳐 예부낭중 사자로 올라갔다. 그리고 을미년(995)에 통직랑 중추직학사가 되었다. 즉 유방헌이 정해년인 987년(성종 6)에 어사우사원외랑으로 사비, 즉 비색 공복을 받고, 을미년인 995년(성종 14) 이전에 예부낭중으로 사자, 자색 공복을 받았다. 원외랑은 정6품, 낭중이 정5품에 해당하므로, 약 8년 정도의 시간 동안 공복 복색이 비색에서 자색으로 바뀌고 있다. 그 계기가 낭중이라는 관직이었다는 점에서, 자삼의 기준이었던 元尹에서 낭중 같은 관직으로 완전히 재편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광종 11년 규정에 있던 단색이 등장하지 않고 복색이 비색, 자색의 순으로 곧바로 바뀌고 있어 4색 공복의 丹色이 제외되는 방향으로 공복제가 개편되었음도 시사한다.<sup>62)</sup>

성종대에 공복 개정이 있었음은 현종대 장리 공복 규정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

강은경, 1999, 앞의 글 및 김윤정, 2010, 앞의 글.

- 61) 金龍善 編, 2012, 『柳邦憲墓誌銘』, 『(第五版)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출판부.
- 62) 강은경, 1999, 앞의 글, 129쪽. 한편 그는 유방헌의 사례를 통해 단색이 제외된 것도 성종 6년~성종 14년 사이라고 추정하였다. 하지만 공복이 관제와 밀접한 상관이 있으므로, 성종 초에 관제 개편에 따라 단색 제외와 같은 복색 개편이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겠다.

(마-2) 현종 9년에 장리의 공복을 정했다. 州府郡縣의 戶長은 紫衫으로, 副戶長 이하와 兵倉正 이상은 緋衫, 戶正 이하 司獄副正 이상은 綠衫으로 모두 가죽신을 신고 홀을 든다. 州府郡縣의 史는 深靑衫, 兵倉史와 諸壇史는 天碧衫이되 가죽신과 홀은 없다.<sup>63)</sup>

(마-3) 갑오일에 삼군이 개선하여 포로를 바쳤다. 왕이 친히 영과역에서 맞이하고, 채봉을 엮고 음악을 준비하여 장수들과 병사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주었다. 금으로 만든 꽃 8가지를 직접 강감찬의 머리에 꽂아준 후 오른손에는 금으로 된 술잔을, 왼손에는 강감찬의 손을 잡고서 위로하고 찬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강감찬이 절을 올려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몸 둘 바를 몰라 하였다. 이어서 영과를 興義로 바꾸고 驛吏들에게 공복[冠帶]을 하사하여 州縣의 향리들과 동등하게 해주었다.<sup>64)</sup>

(마-2)처럼 1018년(현종 9)에 향리의 공복을 정했는데, 자색-비색-녹색-심청색-천벽색의 5색으로 정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복색에 해당하는 향리직의 순서가 문종대 정해진 향리 승진 규정과<sup>65)</sup> 일치한다는 것이다. 곧 5색의 향리 공복은 향리직의 고하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 하겠다.<sup>66)</sup> 이어 (마-3)은 驛吏에 대한 공복 관련 1019년 규정이다. 강감찬이 거란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한 기념으로 개선식이 이루어진 영과역에 내린 우대 조치였다. 물론 驛吏의 경우, 冠帶에 대한 규정을 주현의 吏와 같이 한다는 것으로 공복은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머리에 쓰는 관과 허리에

63) 『高麗史』 72 志 26 輿服 1 冠服 長吏公服 顯宗 9년(1018). “顯宗九年 定長吏公服. 州府郡縣戶長 紫衫 副戶長以下兵倉正以上 緋衫 戶正以下司獄副正以上 綠衫 并靴笏 州府郡縣史 深靑衫 兵倉史諸壇史 天碧衫 無靴笏.”

64) 『高麗史節要』 3 顯宗 10년(1019) 2월 갑오(6).

65) 『高麗史』 75 志 29 選舉 3 鄉職 文宗 5년(1051) 10월. “文宗五年十月 判 諸州縣史 初職後壇史 二轉兵倉史 三轉州府郡縣史 四轉副兵倉正 五轉副戶正 六轉戶正 七轉兵倉正 八轉副戶長 九轉戶長 其公須·食祿正准戶正 副正准副兵倉正 客舍·藥店·司獄正准副戶正 副正准州府郡縣史 以家風不及戶正·副兵倉正者 差之 若累世有家風子息 初授兵倉史 其次 初授後壇史.”

66) 강은경, 1999, 앞의 글.

매는 대는 공복 전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로,67) 冠帶에 대한 규정이 나온다는 것은 공복을 전제하여야만 되는 것이다. 결국 1018년과 1019년의 두 사례에서 주현의 향리와 驛吏까지도 공복을 착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현종대에는 주현의 리나 역리에까지 공복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복색이다. 장리의 복색으로 자색, 비색, 녹색, 심청색, 천벽색의 5색이 등장한다. 또 가장 낮은 등급의 향리인 史級에 해당하는 심청색, 천벽색을 제외하면, 자색, 비색, 녹색의 세 가지이다. 앞서 광종대 김희일의 사례에서처럼 광종대에는 분명 향리에게도 단색 공복이 있었으므로, 현종대에 와서는 향리 복색에서도 단색이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종대에 향리직제가 개편되었으므로,68) 향리 공복 역시 이때 개정되었을 수 있다. 비록 향리 복색에 대한 것이지만 관직자를 대상으로 한 복색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녹색과 청색에 대한 문제는 서공의 견문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앞서 (태)1)에서 그는 吏職의 복색은 庶官의 복색과 다르지 않은데, 綠衣에 색이 진하고[深] 열은[淺] 것이 있다고 했다. 푸른 색이 짙고 열은 것이 구별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복색이라고 하고 있다. 서공의 이런 증언을 인용한다면, 현종대 향리 복색 하위의 세 색은 모두 한 가지, 녹색으로 귀결된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성종대 이후에 관료들의 공복은 자색-비색-녹색의 3색 체제로 변화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69)

또 989년(성종 8)에는 양계의 병마사, 병마부사에 대한 冠服을 처음으로

67) 예컨대 의종대 공복 규정을 보면, 복색에 대한 규정과 함께 冠, 帶, 笏, 魚袋 등 공복을 착용하는 구성품에 대해서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68) 앞의 주57)과 같음.

69) 강은경, 1999, 앞의 글, 130쪽.

로 규정하였다.<sup>70)</sup> ‘冠服’이라고 나오는데, 이때의 복은 의례용으로 입는 제복이나 조복이 아닌 일상 근무를 위한 공복으로 이해되는 바, 이제 대표적인 외관이라 할 병마사의 공복을 마련한 것이다. 분명 중앙의 관직에 대한 공복을 규정한 이후 혹은 동시에 외관에 대한 공복을 마련하였을 것이다. 이 또한 성종대에 공복 규정이 개정되었을 가능성을 더해준다.

정리하자면, 성종대에 들어 고려의 관제는 대대적으로 변하여 중서문하성, 상서성, 6부로 대표되는 중앙관서가 등장하고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그에 따라 공복의 기준이었던 기존의 관계, 관직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시기가 뒤인 현종대에 장리 공복이 단색이 사라지고 자색, 비색, 녹색의 3색으로 정리된 것이 확인되어, 곧 성종대에 공복제가 자, 단, 비, 녹색의 4색에서 단색을 뺀 3색으로 개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 Ⅲ. 인종, 의종대의 공복 개정과 3색 공복의 내용

12세기로 들어가면서 이자의의 난, 이자겸의 난과 같이 지배층의 분열과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치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이 고조되었다.<sup>71)</sup> 이에 예적 질서의 재정비를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미 앞서 1086년(선종 3)에 선종은 사치가 심각하므로 예전의 법전을 조사하여 복식, 거마 등의 제도를 보고하도록 했으며,<sup>72)</sup> 1116년(예종 11)에

70) 『高麗史』 74 志 26 輿服 冠服通制 成宗 8년(989) 3월. “成宗八年三月 始定東西北面兵馬使 玉帶紫襟 兵馬副使 紫衣帶劍.”

71) 채웅석, 1999, 「고려사회의 변화와 고려중기론」, 『역사와 현실』 32

72) 『高麗史』 10 世家 10 宣宗 3년(1086) 7월 병인(11). “秋七月 丙寅 詔曰 朕覽群臣所上封事 多言世俗尙侈靡 莫有禁制 其令所司與宰臣諸學士風憲長官 據先王典禮 凡衣服車馬品制 斟酌詳定 以聞.”

예종은 禮儀詳定所를 설치하여 예제의 검토 및 새로운 예법의 정비를 추진하였다.<sup>73)</sup> 인종 역시도 “선왕의 법은 刑名을 바로 잡고 분수를 자세히 밝혀 의장을 두루 갖추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冠冕의 양식과 의복의 제도에 상하의 구별이 있되 尊卑가 달랐다.”라고 예제를 강조하였다.<sup>74)</sup> 공복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것이다. 의종대 공복 규정은 이런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다.<sup>75)</sup>

의종대에 50권으로 된 『詳定古今禮』가 평장사 최윤의 등의 주도 아래 정리되었는데,<sup>76)</sup> 최윤의는 1155년에 평장사로 임명되었고,<sup>77)</sup> 1162년에 평장사로 죽었다.<sup>78)</sup> 따라서 『상정고금례』로 대표되는 의종대의 예제는 바로 1155년에서 1162년 사이에 정비되었다 하겠다. 그 중 공복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바) 의종조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정했다. “문관 4품 이상은 자색옷을 입고 붉은 띠[紅鞞]를 매고 금어를 차며, 상참 6품 이상은 비색옷을 입고 붉은 띠를 매고 은어를 찬다. 관위가 이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특별히 사여받은 자는 이 예에 구애되지 않는다. 9품 이상은 녹색옷을 입는다. 각문에 도

73) 『高麗史』 14 世家 14 睿宗 11년(1116) 4월 경진(17). “庚辰 御乾元殿 受朝賀 下制曰…… 且國風欲其儉朴 而今朝廷士庶 衣服華侈 尊卑無等 宜令禮儀詳定所 據祖宗代式例沿革 制定以聞.”

74) 『高麗史』 16 世家 16 仁宗 7년(1129) 5월 갑진(27). “甲辰 詔曰 先王之法 正刑名 詳分守 大爲之備 曲爲之防 冠冕之式 衣服之制 上下有別 尊卑不同.”

75) 이 시기 유교적 예제 정비에 따른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다음 참고. 蔡雄錫, 2001, 「12세기초 고려의 개혁 추진과 정치적 갈등」, 『韓國史研究』 112. 김윤정, 2010, 앞의 글.

채웅석, 2013, 「고려 인종대 ‘惟新’정국과 정치갈등」, 『韓國史研究』 151.

76) 『高麗史』 59 志 13 禮 序. “至毅宗時 平章事崔允儀 撰詳定古今禮五十卷.” 『高麗史』 72 志 26 輿服 序. “毅宗朝 平章事崔允儀 哀集祖宗憲章 雜采唐制 詳定古今禮 上而王之冕服輿輅以及儀衛鹵簿 下而百官冠履 莫不具載 一代之制 備矣.”

77) 金龍善 編, 2012, 「崔允儀墓誌銘」, 『(第五版)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출판부. “乙亥年(1155) 中書侍郎同中書門下平章事 判尙書吏部事 兼西京留守使.”

78) 『高麗史』 18 世家 18 毅宗 16년(1162) 8월 임진(28). “壬辰 門下侍郎平章事崔允儀卒.”

열하는 무신은 모두 자색옷을 입되 어대를 차지 않으며, 내시·다방 등의 관원은 본래의 복이 아니라 역시 모두 자색옷을 입되 어대를 차지 않는다. 서경유수는 상서에 준하고 부유수는 3품에 준하며, 이하는 각기 본품에 의거하고, 동경과 남경의 부유수 및 대도호부·목의 관관과 지주사 이상은 공복과 띠, 어대는 본품에 따르되, 자색 및 비색 공복을 차대한 자는 어대를 차지 못한다. 지주의 부사 이하로 자색과 비색의 공복을 입은 자는 붉은 띠를 착용하지 못한다.”<sup>79)</sup>

의종대에 정해진 백관들이 공복을 착용할 때의 규정이다. 문관 4품, 상참 6품, 9품 이상, 각문반의 무신, 내시와 다방 등처럼 공복의 착용 대상이 되는 전체 관료들을 몇 개의 범주화된 그룹으로 나누고 옷의 색깔, 어대, 허리띠 등의 착용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즉 문관 4품 이상은 자색 공복과 金魚를, 상참 6품 이상은 비색 공복과 銀魚를 갖춰 입도록 했다. 서경유수, 부유수는 상서 및 3품에 준하는 등 외관의 경우에도 관직의 본품에 따라 복색과 어대의 패용 여부가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서 문반의 경우 기본적으로 4품, 상참 6품, 9품이라는 세 개의 등급에 따라 자색, 비색, 녹색의 3색 공복을 입도록 했음이 확인된다.

이 같은 복색은 서공의 견문을 통해 이미 인종대에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서공은 1123년(인종 2)에 초반에 사신으로 고려에 왔다가 그때의 견문을 토대로 『高麗圖經』을 지었는데, 그 속에서 공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다. 서공은 자신이 살핀 고려의 관복을 영관복, 국상복, 근시복, 경감복, 종관복, 조관복, 서관복으로 구별하였는데,<sup>80)</sup>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1】와 같다.

79) 『高麗史』 72 志 26 輿服 1 冠服 百官公服 毅宗朝.

80) 『高麗圖經』 7 冠服

【표 1】『高麗圖經』속 복색

명칭	복색	어대	관직
令官服	紫文羅袍	金魚	太師, 太尉, 中書令, 尙書令
國相服	紫文羅袍	金魚	侍中, 太尉, 司徒, 中書門下侍郎平章事, 參知政事, 左右僕射, 政堂文學, 判尙書吏部事, 樞密使副, 同知院奏事
近侍服	紫文羅袍	金魚	左右常侍, 御史大夫, 左右丞, 六尙書, 翰林學士, 承旨學士以上, 及祇待國朝使命接伴, 館伴官
從官服	紫文羅袍	x	御史中丞, 諫官, 給事侍郎, 州牧留守使副, 閤門執贊, 6尙直官, 都知兵馬, 4部護使 등,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
卿監服	緋文羅袍	銀魚	6寺卿貳, 省部丞郎, 國子儒官, 祕書典職 이상
朝官服	緋文羅袍	銀魚	司業博士, 史館校書, 太醫司天兩省錄事 이상
庶官服	綠衣	x	

서금은 고려의 관인들을 7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하는 복식과 복두, 어대 등을 적고 해당하는 관직들을 나열하고 있다. 위 【표 1】에서는 복두에 대한 부분은 생략을 했다. 이를 보면 자색-비색-녹색의 셋으로 복색이 나뉘며, 어대의 경우에는 패용 여부, 패용할 경우에는 다시 금어대와 은어대로 나뉘어 있다. 즉 관직에 따라 복색, 어대의 소재, 어대 패용 여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조합되어, 각 관직에 맞는 공복을 갖춰 입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의 의종대 기록보다 30여년 앞선 건문인데, 여기에서도 자색, 비색, 녹색의 3색 공복이 적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의종대의 기록과 『고려도경』의 규정과 비교해 보자.

자색복을 입는 대상으로 서금은 영관복, 국상복, 근시복, 종관복의 네 그룹에 太師, 太尉, 中書令, 尙書令을 시작으로 관직들을 각각 나열하고 있다. 가장 낮은 종관복 대상자를 보면, 御史中丞, 諫官, 給事侍郎, 州牧留守使副, 閤門執贊, 6尙直官, 都知兵馬, 4部護使 및 ‘특별한 은혜를 입은 이들[與其非泛恩數]’이다. 외관인 州牧留守使副, 4部護使나<sup>81)</sup> ‘특별한 은혜

를 입은 자'의 경우를 일단 제외하면, 어사중승, 간관, 급사시랑, 합문집찬, 6상직관, 도지병마가 남는다. 이중 급사시랑은 중서문하성의 급사중과 6부의 시랑을 말하는 것 같고, 간관은 중서문하성의 낭관들인데 정4품인 좌우간의대부와 종4품의 중서사인으로 이해된다. 특히 어사중승과 급사중, 중서사인은 給舍中丞으로 합칭되는 비슷한 지위의 관직이다. 이들은 모두 종4품에 해당하는 관직들로, 각 관서의 차관격에 해당하는 관직들이다.<sup>82)</sup> 또 합문집찬은 '집찬'이란 명칭으로 보아 각종 의례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사, 인진사, 인진부사, 부사를 비롯해 통사사인이나 합문지후까지의 관직들로 보이는데, 관품상 모두 비색복과 은어대의 대상이어야 한다.<sup>83)</sup> 하지만 '합문집찬'으로 묶여 모두 자색복을 입는다고 하였으니, 아마도 궁중에서 국왕이 주재하는 의례를 진행하는 역할 때문에 우대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종관복에 해당되는 관직들은, 궁중과 관계되어 특별대우를 받는 합문과 6국을 제외하면, 대체로 2성6부의 차관급인 4품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sup>84)</sup>

다음으로 비색 공복에 해당하는 관직군을 보면, 의종대 규정에는 상참6품 이상으로, 『고려도경』에는 경감복으로 6寺卿貳, 省部丞郎, 國子儒官, 祕書典職 이상, 조관복으로 司業博士, 史館校書, 太醫·司天兩省錄事 이상이라 되어 있다. 두 기록 모두 복색에 대해서는 비색복과 은어대로 규정된 내용이 같다. 6시의 장차관은 군기감, 태부시, 소부시와 같은 행정

81) 외관직 자체가 어대의 패용 기준인 唐宋과는 달리, 고려시대 지방관은 경관직을 겸대하고 그 경관직이 외관의 지위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공복이나 어대의 경우도 경관직에 따랐을 것이다.

82) 상시(정3품)가 郎官 중 가장 높고, 간의대부(정4품), 중서사인·급사중(종4품)의 순이다. 따라서 상시가 간관의 長, 그 다음인 간의대부 등은 그 副長格이다. 어사중승은 어사대의 장관인 어사대부의 다음이고, 시랑은 6부의 장관인 尙書의 다음이다.

83) 『高麗史』 76 志 30 百官 1 通禮門에 따르면, 사와 인진사는 정5품, 인진부사는 종5품, 각문부사는 정6품, 통사사인과 지후는 정7품이다.

84) 김보광, 2015, 앞의 글. 또한 같은 글에서 州牧留守使副와 4部護使라는 외관도 자색복에 해당하는 관직들로 京官을 지닌 채 임명되는데, 의종대 규정과 같음을 보였다.

실무 기구를 말하는데, 이들 조직은 卿과 少卿 또는 丞과 副丞이 장차관으로 있다. 예컨대 위위시의 장관인 경은 문종대를 기준으로 종3품, 차관인 소경은 종4품이었다.<sup>85)</sup> 이는 여타의 寺監도 비슷하다. 즉 관품으로 보면, 이들은 모두 자색 공복을 입었어야 한다. 이어 省部丞郎은 중서문하성과 상서성, 6부의 ‘승랑’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미 근시복과 종관복에서 중서문하성의 상시, 丞, 6부의 상서와 시랑이 포함되었으므로, 그 이하의 관직으로 하겠다. 그럼 중서문하성의 종5품인 기거주, 기거랑, 기거사인, 상서성과 6부라면 낭중(정5품)과 원외랑(정6품)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참상직이다.

이어 경감복의 국자유관, 조관복의 사업박사, 사관교서를 보자. 國子儒官과 사업박사는 모두 국자감의 관직으로 생각된다. 이때 儒官으로 漵주, 사업, 승 등이 상정되는데, 국자사업으로 자색복을 입은 사례가 있어<sup>86)</sup> 漵주와 사업의 복색은 자색이라고 이해된다. 그럼 丞만 남는데, 문종대를 기준으로 종6품이었다. ‘사업박사’는 성종대의 관직명이었고 문종대에 국자박사(정7품)로 개칭되었다.<sup>87)</sup> 史館校書는 사관의 관직으로, 감수국사, 수국사, 동수국사, 수찬관은 2품 이상(修國史들) 또는 한림원 3품 이하가 겸하도록 되어 있다. 또 直史館이 있는데, 이들은 8품 정도로 생각된다.<sup>88)</sup> 또 祕書典職의 경우, 비서성의 장차관인 경(종3품)과 소경(종4품)은 앞서 언급한 6寺卿貳와 비슷한 것으로 보여, 그 이하의 丞(종5품), 郎(종6품)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sup>89)</sup> 太醫·司天兩省錄事는 태의감과 사천대의 녹사라 하겠는데, 문제는 이들 두 기구에 녹사라는 관직이 없다는

85) 『高麗史』 76 志 30 百官 1 衛尉寺.

86) 金龍善 編, 2012, 『尹彥頤墓誌銘』, 『(第五版)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출판부. “丁未在秋官理獄 獄空二十三日 冤枉頓釋 改吏部郎中 餘如故 遷國子司業寶文閣待制知制誥 賜紫金魚袋.”

87) 『高麗史』 76 志 30 百官 1 成均館.

88) 『高麗史』 76 志 30 百官 1 史館. 연혁에 따르면 직사관은 뒤에 8품으로 정해졌다.

89) 『高麗史』 76 志 30 百官 1 典校寺.

점이다. 이들 기구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대신 丞, 注簿가 있었다. 태의감의 경우, 승만 종8품으로 있었고, 사천대의 경우, 승이 종6품, 注簿는 종7품이다.<sup>90)</sup> 흥미로운 부분은 국자승부터 이들 관직이 모두 참의 직으로,<sup>91)</sup> 의종대 규정에 따르면 녹색 공복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인종대에 비색에 해당되었다가 의종대에 변동되었거나 서공의 언급에 오류가 있는 것인데, 어느 쪽이 맞는지 분명히 알 수 없다.<sup>92)</sup>

이상에서 서공이 비색 공복을 입는 것으로 언급한 관직들을 검토한 결과, 거의 의종대 규정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종과 의종대의 공복제가 대체로 자색·비색·녹색의 3색 공복체계에 맞춰 운영되었다고 하겠다.<sup>93)</sup> 그리고 인종, 의종대에 정비된 공복 규정에 등장하는 관직명이나 구조는 사실상 성종대에 마련된 관제를 따른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공복제 역시 성종대 제도에서 연유하였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겠다.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각종 제도가 당제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 점은 『고려사』를 지은 조선초의 유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사-1) 지금 (고려의) 官名이나 勳秩이 중국의 것을 모방하고 있어 그 사유를 물으니 開元의 故事를 따르고 있다고 답하였다.<sup>94)</sup>

90) 『高麗史』 76 志 30 百官 1 典醫寺·書雲觀.

91) 李鎭漢, 1997, 「高麗時代 叅上·叅外職의 區分과 祿俸」, 『韓國史研究』 99·100, 178~180쪽.

92) 다만 한 두 관직이 아니라 서공이 國子儒官, 祕書典職, 司業博士, 史館校書, 太醫·司天兩省錄事으로 묶은 관직 모두가 해당된다는 점에서, 인종대 비색이던 이들이 의종대 공복 규정에서 ‘상참6품’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녹색 공복 대상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93) 물론 이러한 운영방식에도 불구하고 서공이 ‘其非泛恩數’라고 한 것처럼 복색에 대한 혜택을 베풀어 주는 임금의 ‘은혜’가 수시로 있었다(김보광, 2015, 앞의 논문, 주23)).

94) 『高麗圖經』 7 冠服 尙官服.

(사-2) (태조) 2년(919)에 3省 · 6尙書 · 9寺 · 6衛를 두었으니, 대체로 唐制를 본 뜬 것이었다.<sup>95)</sup>

(사-1)은 서궁이 고려에 와서 고려의 관제가 왜 중국의 것을 모방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었더니 고려인이 당 현종의 연호인 開元을 들어 답하였다는 기록이다. ‘開元故事’로 대표되는 당나라의 제도를 고려가 좃고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즉 고려의 관제가 당제라는 것이다. 이런 점은 (사-2)의 「백관지」 서문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조선초 『고려사』의 찬자들이 고려의 관제를 집대성하여 「백관지」를 지으면서 그 서문에 ‘당제를 본떴다’라고 평가한 것이다.

하지만 이 당시 고려의 복색은 당제와 달랐다. 『唐六典』에 보면,<sup>96)</sup> 3품, 5품, 7품, 9품을 경계로 각기 자색, 비색, 녹색, 청색으로 입는다고 되어 있다. 『당육전』이 바로 玄宗 開元 연간에 만들어진 것이므로,<sup>97)</sup> 이 조항이 바로 ‘開元古事’의 실체였다. 하지만 광종대의 규정이건 의종대의 규정이건 고려인이 말하는 개원 연간의 당제와는 복색에서부터 분명 달랐다. 실제로 1123년의 고려 상황을 본 서궁은 고려인들과는 달리 그가 목격한 고려의 공복제 등에 대해서 송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사-3) <고려에서는> 점차 우리 중국풍[華風]에 젖게 되면서 천자의 총애를 입어 복식 제도가 개선되어 우리 송의 제도를 한결같이 따르게 되었으니, 변발(辮髮)을 풀고 썩[衿]을 바꾸는데 그친 것만이 아니다. 그렇지만 <고려는> 관직명이 일정하지 않고, 조정에서 입는 옷과 집에서 입는 옷

95) 『高麗史』 76 志 30 百官 1 序.

96) 『唐六典』 4 尙書禮部. “親王 三品已上 二王後服用紫 飾以玉 五品已上服用朱 飾以金 七品已上服用綠 飾以銀 九品已上服用青 飾以鍮石 流外 庶人服用黃 飾以銅鐵”

97) 金鐸敏 主編, 2003, 「解題」, 『譯註 唐六典』, 신서원, 15~20쪽

이 〈우리 중국의 것과〉 다르다.<sup>98)</sup>

(사-4) 근년에 〈고려〉 사신[貢使]이 중국 궁궐에 와서[詣闕] 송[朝廷]의 하사품인 10등 관복(冠服)을 얻은 것을 계기로 중국 제도를 좇았다.<sup>99)</sup>

서공은 고려의 복식제도가 ‘송의 제도를 한결같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평가하면서 송의 복식과 흡사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고려의 사신이 왔을 때 송이 ‘10등 冠服’을 내려준 데에서 그 계기를 찾고 있다. 서공이 고려의 공복제도가 송의 것과 매우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은 데에는 송의 공복제도와 유사했기 때문일 것이다. 송의 공복제를 간단히 보자.

(사-5) 원풍 원년(1078), 청색을 없애고 사용하지 않는다. 산계가 4품에 이르면 자색옷을 입고, 6품에 이르면 비색옷을 입는데, 모두 상아로 된 홀을 들고 어대를 찬다. 9품 이상은 녹색옷을 입는데 나무로 된 홀이다. 무신과 내시는 모두 자색옷을 입는데 어대를 차지 않는다.<sup>100)</sup>

(사-6) 예로부터 고려는 당(唐)의 제도를 모방하여 푸른[碧] 옷을 입었다고 전하나, 이제 물어 보니 그렇지 않다.<sup>101)</sup>

(사-5)는 『宋史』輿服志의 공복 관련 기록인데, 4품, 6품, 9품을 기준으로 자색, 비색, 녹색의 복색이 대응하고 있다. 이는 3품 이상 자색, 4, 5품 비색, 6, 7품은 녹색, 8, 9품은 청색의 4색 공복이었던 당제에서 바뀐 것이다.<sup>102)</sup> 물론 고려는 관직이 기준이었던 데 비해, 송은 階官이라 하여 산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차이이지만, 기준선과 복색은 사실상 의종대의 규정과 동일하다.<sup>103)</sup> 더구나 서공은 자신이 고려가 당제를 모방하였다

98) 『高麗圖經』 7 冠服

99) 『高麗圖經』 20 婦人

100) 『宋史』 153 輿服 5 諸臣服下 公服 元豐 元年(1078).

101) 『高麗圖經』 21 皂隸 吏職.

102) 앞의 주96) 참고.

103) 당송의 공복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이 참고된다.

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직접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서공은 ‘碧色’이라고 한 푸른색이 공복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고려가 ‘송의 제도를 한결같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평가한 것처럼 송의 복색과 더욱 비슷하다고 느꼈다.

이제 다시 김부식이 송에 가서 경험한 상황을 보자.

(사-7) 신(김부식)은 上國에 사신으로 세 번 갔는데, 일행의 衣冠이 송나라 사람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조회에 들어가다가 너무 일찍 도착하여 紫宸殿 문 앞에서 있는데, 閤門員 한 명이 와서 “누가 高麗人 使者인가”라고 물기에 “나다”라고 하였더니 웃으면서 간 일이 있습니다.<sup>104)</sup>

이것은 김부식이 宋으로 사행을 갔을 때의 일화를 전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다.<sup>105)</sup> 그의 활동시기상 예종대와 인종대 전반의 시기로 이해된다. 송의 수도 開封에서 朝會를 위해 입궐하여 기다리던 김부식은 분명 사신단의 일원으로 황제를 알현하거나 관련된 의례에 참여하기 위해 정해진 격식에 맞는 衣冠, 즉 朝服이나 公服을 입고 있었을 것이다. 물론 송이 아닌 고려의 服이었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송의 官인이, 그것도 궁중에서의 의례를 주관하는 閤門의 관인이 다가와서 고려의 사신이 어디에 있는 지를 물었다는 사실은, 송의 관인이 김부식을 송나라 관인으로 착각하였음을 뜻한다. 김부식의 이런 경험에서 고려의 공복이

---

이현숙, 1992, 앞의 글.

김윤정, 2010, 앞의 글.

이종서, 2012, 「고려 국왕과 관리의 복식(服飾)이 반영하는 국가 위상과 자의식의 변동」, 『한국문화』 60.

104) 『三國史記』 33 雜志 2 色服.

105) 김부식 스스로 세 번 송으로 사행을 했다고 밝혔는데, 1116년 7월부터 1117년 5월까지, 1126년 9월부터 1127년 5월까지 宋에 다녀온 것이 확인된다(『高麗史』 15 世家 15 仁宗 4년(1126) 9월 을축(2)). 나머지 한번은 확인할 수 없다.

송나라 관인이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송의 것과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김부식의 경험담이 예종, 인종대이므로, 서궁이 목격한 1123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같았다고 보아도 무리 없을 것이다. 송의 합문 관원이 김부식의 복식을 보고 헛갈릴 정도였으니, 동시기의 서궁이 고려의 복색을 보고 ‘송의 제도를 한결같이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도 전혀 이상한 상황이 아니다.

결국 고려인들 스스로 그들의 公服制를 (사·1)처럼 ‘개원의 고사’를 따랐다고 하지만, 그것은 당제의 원형 그대로를 답습한 것은 아니었다. 성종대에 중서문하성, 상서성 등 唐制에 입각한 관제를 도입하였지만, 중추원과 같은 송제도 받아들였음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고려가 수용한 ‘당제’는 당제 자체가 아니라 송이 이해하고 수용한 당제였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아마도 현실에 존재하던 ‘송제화된 당제’를 참고하여 수용하였기 때문에<sup>106)</sup> 벌어진 현상이라 하겠다.

요컨대 문종 이후 고려는 예제를 강조하면 정치, 사회질서의 회복을 도모하였다. 이는 의종대에 『詳定古今禮』의 편찬으로 집대성되었다. 성종대 이래 3색으로 운영되던 복색으로 공복제가 정리되었다. 3색의 구별은 인종대 고려에 온 서궁의 견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4품 이상, 상삼 6품 이상, 9품 이상의 셋으로 나뉜다. 복색에 따라 서궁이 진술한 관직들은 대체로 의종대의 공복 규정과도 대부분 부합함을 확인했다. 이를 보고 서궁은 고려의 공복제가 송의 것을 모방했기 때문으로 이해하였지만, 고려가 성종대 이래 ‘송제화된 당제’에 따른 관제를 수용한 결과가 공복제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106) 김대식, 2005, 앞의 글.

## 맺음말

이 글은 광종 11년과 의종대의 공복 규정 사이의 시간적 간극을 메워 공복의 정비 과정을 살피보자 한 것이다. 이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는 것을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고려는 자색, 비색, 단색 등의 공복 사례나 어대의 사례들이 태조 때부터 확인되어 국초부터 공복을 입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라의 유제가 남아 있는 등 아직 혼란한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은 알기 어렵다. 이후 광종 11년에 후주의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정리하여 공복 규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공복 규정은 자색, 단색, 비색, 녹색의 4색으로 나뉘고 원윤이라는 官階 및 중단경, 도향경, 소주부라는 관직이 그 기준이었다. 또한 원윤 이상의 호족들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향리들도 단색 공복을 입거나 급제를 통해 입사한 진사도 녹색 공복을 입는 등, 사실상 관직자들만이 아니라 향리 등 사실상 모든 지배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하지만 아직 官階와 官職이 동시에 공복 착용 기준으로 적용되어 공복 착용상에 혼란한 상황이 여전하기도 했다.

성종대에 들어 고려의 관제는 대대적으로 변하여 중서문하성, 상서성, 6부로 대표되는 중앙관서가 등장하고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그에 따라 공복의 기준이었던 기존의 관계, 관직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현종대 장리 공복이 개정되는 가운데 자색, 비색, 녹색의 3색으로 정리되고 단색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성종대 관제 개편에 따라 향리의 공복만이 아니라 공복제가 자색, 비색, 녹색의 3색 공복제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된다.

문종 이후 고려는 예제를 강조하면 정치, 사회질서의 회복을 도모하였다. 이는 의종대에 『詳定古今禮』의 편찬으로 집대성되었다. 성종대 이

래 3색으로 운영되던 복색으로 공복제가 정리되었다. 3색의 구별은 인종대 고려에 온 서공의 견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4품 이상, 상참 6품 이상, 9품 이상의 셋으로 나뉜다. 복색에 따라 서공이 진출한 관직들은 대체로 의종대의 공복 규정과도 대부분 부합함을 확인했다. 이런 구조를 서공은 고려의 공복제가 송의 것을 모방했기 때문으로 이해하였지만, 고려가 성종대 이래 ‘송제화된 당제’에 따른 관제를 수용한 결과가 공복제에도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1차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高麗圖經』 (이상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고려시대史料, <http://db.history.go.kr/KOREA/>)  
金龍善 編, 2012, 『(第五版)高麗墓誌銘集成』, 한림대출판부

### 2. 연구논저

- 강은경, 1999, 「高麗時期 鄉吏 公服制」, 『韓國思想과 文化』 4, 한국사상문화학회
- 김대식, 2005, 「고려 초기 중앙관제의 성립과 변화」, 『역사와 현실』 58, 한국역사연구회
- 金甫桃, 2012, 「고려 태조의 政治觀과 國政 운영」, 『韓國人物史研究』 17, 한국인물사연구회
- 김보광, 2014, 「고려 성종·현종대 太祖配享功臣의 선정 과정과 의미」, 『사학연구』 113, 한국사학회
- 김보광, 2015, 「고려전기 魚袋의 개념과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韓國史研究』 169, 한국사연구회
- 김윤정, 2010, 「고려전기 집권체제의 정비와 관복제의 확립」, 『한국중세사연구』 28, 한국중세사학회
- 朴龍雲, 1981, 「高麗時代의 文散階」, 『震檀學報』 52, 震檀學會; 1997, 『고려시대 官階·官職 연구』, 고려대출판부
- 朴龍雲, 1990, 「高麗時代의 科擧—製述科의 運營—」, 『高麗時代 蔭敘制와 科擧制 研究』, 一志社

- 서옥경, 1997, 「고려시대와 송대의 관복 비교연구 -공, 상복을 중심으로-」, 『복식』 31, 한국복식학회
- 申虎澈, 1981, 「高麗 光宗代の 公服制度」, 『高麗光宗研究』(이기백 편), 一潮閣
- 李基白 등, 1993, 『崔承老上書文研究』, 一潮閣
- 이승해, 2011, 『고려시대 官服 연구』, 이화여대 의류직물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종서, 2012, 「고려 국왕과 관리의 복식(服飾)이 반영하는 국가 위상과 자의식의 변동」, 『한국문화』 60,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 李鎭漢, 1996, 「高麗 前期 官人の 初入仕와 土地分給」, 『민족문화 연구』 2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9, 『고려전기 官職과 祿俸의 관계 연구』, 一志社
- 李鎭漢, 1997, 「高麗時代 參上·參外職의 區分과 祿俸」, 『韓國史研究』 99·100, 韓國史研究會; 1999, 『고려전기 官職과 祿俸의 관계 연구』, 一志社
- 이현숙, 1992, 「신라말 魚袋제의 成立과 運用」, 『史學研究』 43·44, 한국사학회
- 이현숙, 2014, 「금석문으로 본 고려 후기 어대제의 변화」, 『역사와 현실』 91, 한국역사연구회
- 임경화·강순제, 2006, 「고려 초 공복제(公服制) 도입과 복색(服色) 운용에 관한 연구」, 『복식』 56-1, 한국복식학회
- 黃善榮, 1987, 「高麗初期 公服제의 成立」, 『釜山史學』 12, 부산사학회; 2002, 『나말여초 정치제도사 연구』, 국학자료원

## Abstract

# A Study on the Modifications of Official Uniforms of Government Officials in the early Goryeo Dynasty

Kim, Bo-kwang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odification of official uniforms of government officials by looking at changes in the system of official uniforms of government officials between the 11<sup>th</sup> year of King Gwangjong's reign (960) and the year of King Uijong's reign (before and after Year 1160). As there are the cases of government officials wearing official belts and official attires in purple, celadon green and velvet during the years of King Taejo's reign, it is assumed that government officials of the Goryeo court wore them from the beginning of the Goryeo Dynasty.

However, it is difficult to know how exactly it was implemented since the dynasty was still in chaos with the remaining legacies of the Silla Dynasty. But it seems that in the 11<sup>th</sup> year of King Gwangjong's reign, the system of official uniforms was established after adopting the system of the Later Zhou Dynasty and rearranging it in a certain way. Four colors of official uniforms such as purple, velvet, red and celadon green were introduced and worn by government officials according to their ranks in office such as Gwan-gye or titles such as Jungdan-gyeong, Dohang-gyeong and Sojubu.

However, as the government structure was overhauled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changes were made to the existing public offices and positions. Moreover, under the revised system of official uniforms of

government officials during the reign of King Hyeongjong, three colors of official uniforms, namely purple, red and green remained while the velvet color was removed.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during the new bureaucratic system of King Seongjong, not only did the official uniforms of low-ranking government officials change but also the court attire system of three colors, namely purple, red and green was revised.

In the Goryeo Dynasty after the reign of King Munjong, the importance of ancestral rites was emphasized while the social order and recovery were promoted, and during the reign of King Uijong they became codified. The records of differentiating the official uniforms of three colors to indicate government officials above level 4, level 6 and level 9 were found in a story accounted by Xu Jing who visited Goryeo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ng. Though Xu Jing understood such structure of the system as a copy of the system in the Song China, it reflected the political system of the Tang Dynasty customized by the Song.

Keywords: official uniforms, four colors of official uniforms, three colors of official uniforms, Political system of the Tang Dynasty customized by the Song

